

2025년 농산물우수관리(GAP) 생산자단체·마을 육성사업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재공고

「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
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4월 16일

제주특별자치도지사

1. 신청자격

-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생산자단체·마을·농업법인·농협 등
- 세부자격요건 별도 붙임의 사업지침 반드시 확인

< 보조금 지원 부적격 단체 >

-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
-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
-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(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)
- 지방세가 체납된 경우
- 허위 및 부당한방법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가 취소된 마을·농업법인·농협등
- 최근 3년간 동일사업 지원받은 마을·농업법인·농협 등

2. 지원 대상 사업

사업명	지원 규모	사업내용	보조율
농산물우수관리(GAP) 생산자단체·마을 육성사업	140,000 천원	- 생산·위생기반시설, 유통·전처리시설 등 ※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」 [별표 5]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위생시설 및 농장관리	6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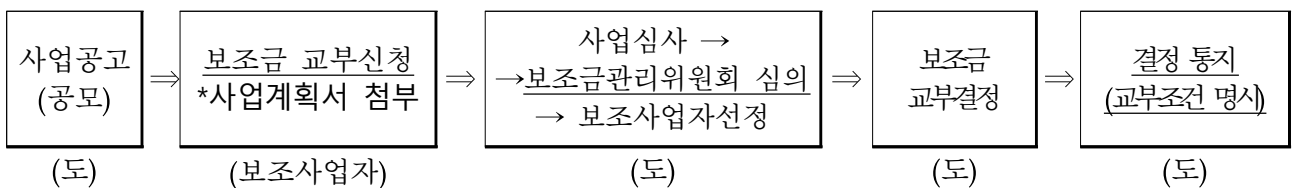
- 사업추진 기간: 2025. 선정일 ~ 12. 31.
- 지원조건: 총사업비의 자부담 비율 40% 이상 확보하여야 함
- 지원제외
 - 허위·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가 취소된 경우
 - 최근 3년간 동일사업(장비 및 시설)을 지원받은 경우
 - *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한 사업 포함

3. 신청 및 접수

- 신청기간: 2025. 4. 16.(수) ~ 4. 29.(화) * 근무시간 내 접수
- 신청방법: 방문, 우편 신청 **【2025. 4. 29.(화) 18:00 도착분까지 유효】**
- 접수장소: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
- 신청서류: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, 사업계획서, 단체소개서, 기타 구비서류 등 각 1부
 - ※ 기타 구비서류는 "농산물우수관리(GAP) 생산자단체·마을 육성 사업지침" 확인
- 문의처: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(☎064-710-3162)

4.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

- 심사방법: 부서 자체 심사 →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·결정
 - ※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, 보조사업자의 성격, 수행능력 등을 심사
- 부서 자체 심사기준: 심사표(붙임 1)
- 결과통보: 선정자 개별 통보



〈 유 의 사 항 〉

1.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

- 교부신청서 제출(신청자 명칭, 주소,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,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, 자부담액, 보조사업기간,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)
- 사업계획서 제출(사업개요,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, 보조사업 수행 계획,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,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, 보조사업 효과,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,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)
- 보조금 자부담통장(계좌) 등 사본 제출 :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,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
-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

2. 보조사업의 수행

-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
-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
-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
-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
-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

3.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

-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,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
-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
-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반기별 보고
-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받아야 함
- 지방보조금 총액이 10억 이상인 특정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제출

4.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

-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
-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
-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부과
- 법령,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-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보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

5. 기타사항

-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
-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
-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,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, 기타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
- 궁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(☎064-710-316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